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등 지원시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의4 신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할 때 외국인의 여권에 사증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있어 행정직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외국인도 사증을 수령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함.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간’ 확대(안 제49조 제4항 개정)

법무부장관은 기관 등의 외국인 지원업무 수행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등 지원시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전단 중 “역서(曆書)”를 “달력”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4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사증발급확인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확인서에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운수업자에게 사증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사증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

④ 사증발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사증발급확인서에 기재된 사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34조의2(체류허가 신청 등 온라인 방문 예약)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포함)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하려는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변경·추가 허가의 신청(제21
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지 변경·추가 신고 포함)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거소신고를 포함한다)

제49조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간인(間印)”을 “결침도장”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보관금이나 영치품(領置品)”을 “보관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8조의6제2항 본문 중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96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1호가목 중 “채용하는”을 “채용된 사람과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 아닌 기업에 투자한”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영주(F-5)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란 제5호 중 “사람”을 “사람(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 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 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u>역서</u> <u>(曆書)</u> 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 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 ----- ----- ----- ----- 달력----- ----- ----- -----.		
<u><신 설></u>		제7조의4(사증발급확인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하여 사 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확인서에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확인 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법 제2 조 제10호에 따른 운수업자에게 사증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 써 사증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		

<신 설>

다.

④ 사증발급확인서의 유효기간
은 사증발급확인서에 기재된 사
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34조의2(체류허가 신청 등 온라
인 방문 예약)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하고자 하
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포
함)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포함)의 명칭, 방문 일
시, 신청하려는 업무 등을 방문
하는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하
여야 한다. 다만, 노약자, 임산
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변경·추가 허가의 신
청(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지 변경·추가 신고 포

	<u>함)</u>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 부여의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 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 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거소신고를 포함한다)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 ③ (생략)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u>2년</u> 이내로 한다. ⑤·⑥ (생략)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3년</u>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신문조서)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 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 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 여금 조서에 <u>간인(間印)</u>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신문조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 <u>결침도장</u> ----- ----- ----- -----.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이나 영치품(領置品)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없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

① _____

보관금품

_____.

② (현행과 같음)

(3) -----

----- .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강제
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
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
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 (생략)

3.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 첨부하여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